사기·범인 도피교사·범인도피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. 2011고단4366,2011고단6668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덕진, 위성국(기소), 이덕진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로고스 외 3인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, 피고인 3(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), 피고인 4, 피고인 5(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)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- 2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, 4,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- 3.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- 4.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, 증 제5호, 증 제10호, 증 제16호 내지 증 제18호, 증 제20호 내지 증 제31호, 증 제35호 내지 증 제42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